

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4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구미시립예술단의 구성과 단원의 위·해촉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구미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구미시립예술단의 구성 임의화(안 제2조제2항)
- 나. 단원 등의 위촉기간 단서 조항 신설(안 제5조제1항)
- 다. 조문 제목 및 해촉 요건 변경(안 제6조)
- 라.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구성 비율 의무화(안 제12조제1항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양성평등기본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단을 둔다”를 “단 등을 둘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신규위촉의 경우 위촉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.

제6조의 제목 “(단원 등의 해촉)”을 “(단원 등의 당연해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은 단원”을 “단원”으로, “해당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”를 “당연히 해촉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”를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61조제1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하여야”를 “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공연기획담당”을 “공연기획팀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 (생 략)</p> <p>② 예술단에는 다음 각 호의 단 을 둔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 <p>제5조(단원 등의 위촉기간) ① 단 원 등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 다. <단서 신설>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6조(단원 등의 해촉) 시장은 단 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<u>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</u></p> <p>4. <u>상임단원 등으로서 단장의 승인 없이 자체 공연 외의 다 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참여한 경우</u></p> <p>5. <u>예술인으로서의 품위와 권위,</u></p>	<p>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단 등을 둘 수 있다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단원 등의 위촉기간) ① - ----- --. <u>다만, 신규위촉의 경우 위촉 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단원 등의 당연해촉) 단원 ----- ----- <u>당연 히 해촉된다.</u></p> <p>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1조제1 호---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

위신을 떨어뜨린 경우

6. 각 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
손해를 끼친 경우

<삭 제>

7.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
부하거나 회피한 경우

<삭 제>

8. 기량이 현저히 떨어지거나
신체, 정신상의 장애로 연습과
공연활동에 참가할 수 없는
경우

<삭 제>

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
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
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위원으
로 구성하며, 위촉직 위원의 경
우에는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
어지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
하여야 한다.

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-----

----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
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-
-----.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간사 등) ① (생 략)
② 간사는 공연기획담당이 되
고,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
원장이 임명한다.

제17조(간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 공연기획팀장-----

-----.

관계법령

□ 「양성평등기본법」

제21조(정책결정과정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(위원회, 심의회,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, 협의,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국가 및 시·도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실무위원회
2. 시·군·구가 구성하는 위원회: 시·도위원회

□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61조(당연퇴직)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.

1.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제31조제2호는

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, 제31조제5호는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,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·제3호,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,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.

소 관 부 서		문화예술회관
입 안 자	과 장	유 영 익
	팀 장	차 은 정
	담 당 자	이 종 민 (480-4564)